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5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김준형 · 박지원 · 황운하
김재원 · 손명수 · 이기현
남인순 · 이해민 · 문대림
강경숙 · 차규근 · 최혁진
박은정 · 전종덕 · 백선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게임·만화·음악·영화·애니메이션·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콘텐츠산업 현황조사·분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제적·산업적·제도적·정책적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시기·범위·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공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콘텐츠산업 현황조사 · 분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 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 산업적 · 제도적 · 정책적 현황에 관한 조사 ·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분석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 공개하여야 한다.</u></p> <p><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콘텐츠 관련 기관 ·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조사 · 분석의 시기 · 범위 ·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 공개의 방</u></p>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